

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Q&A

2015. 6.



보건복지부

1. 메르스(MERS) 진료비 지원 기준은?

- 메르스(MERS) 의심 및 확진 환자로 인정되어 국가 지정격리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입원비 및 진료비 지원(외래지원 제외)
 - * 자가격리자는 의료기관 격리, 치료 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고열, 기침 등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원 시점부터 진료비 지원
-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에서 메르스(MERS)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메르스(MERS) 환자 발생 의료기관을 코호트 격리 결정한 경우
 - 해당 의료기관 입원 환자(일반, 메르스)에 대하여는 메르스(MERS) 진료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

2.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현행 제도와의 지원 관계는?

- 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등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 대로 해당 제정으로 부담하고 환자 본인부담금(비급여 포함)은 메르스(MERS) 지원 예산에서 부담
- 보훈환자, 산재환자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에서 보호(지원)되고 있는 환자가 메르스(MERS) 환자로 격리입원하는 경우는
 - 보훈·산재제도에서 보호(지원)하고 일부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메르스(MERS) 진료비에서 지원

3. 진료비 지원 기간 및 내용은?

- 지원기간은 격리 **입원일부터 퇴원일**(지침 시행일 이전 입원자 소급적용)
 - * '15. 5. 20. 진료분부터 적용(최초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일)
- 메르스(MERS) 입원, 진료비를 지원하되, 메르스(MERS)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

4.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지원 기준은?

- 기저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메르스 의심환자로 결정되어 격리입원하는 경우
 - 기 입원 중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이며, 메르스 의심환자로 결정되어 격리입원한 시점부터 입원, 치료비 지원
 - * (예시1) 암환자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의심환자로 확인되어 격리입원하는 경우 기 입원 중 진료비와 격리입원 기간동안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치료비, 입원비 지원은?
 - 격리입원 결정전 입원비 및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
 - 격리입원 결정 후 메르스 치료와 전혀 관련 없는 항암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하고 입원비는 메르스(MERS)에 따른 격리조치이므로 지원
 - 격리 해제후 기존 질환으로 계속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등 지원 불가
-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메르스(MERS)에 감염되어 격리입원하는 중 메르스(MERS)의 원인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진료비 지원 가능

* 기저질환, 메르스 치료의 구분 및 메르스에 의한 기저질환 악화여부는 의사 소견 등 의료기관에서 판단

5.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은?

- (기준)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 결정되어 격리입원으로 발생한 진료비 중 **비급여 부분**(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)에 대하여도 지원
- (간병비) 격리입원은 제3자에 대해 감염을 예방하고 격리 환자에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므로
 - 간병인 등 의료인을 제외한 제3자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제한 필요함에 따라 격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는 미지급

6. 메르스(MERS) 환자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기준은?

- (비용지급) 환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
- (입원치료 과정)
 - (입원) 메르스(MERS) 환자로 입원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
 - *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→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통보
 - (진료비 지급 확인)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완료한 경우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는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
 - *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→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확인서 이송

7. 환자가 병원을 이동하는 경우 지원은?

- 의심환자로 ㉠의료기관에 격리 입원하던 중 확진환자로 전환되어 ㉡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각각의 의료기관별로 진료비 지원

8. 외국인 메르스(MERS) 환자에 대한 지원은?

- (근거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9호
 - * 제67조(국고 부담 경비)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.
 - 9.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, 조사, 진찰 등에 드는 경비
- (지원절차)
 - 내국인 메르스(MERS)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절차와 동일.
다만, 진료비는 국비 지원 사업이므로 진료비 집행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

<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>

-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→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→ ③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 → ④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보건소에 청구 → ⑤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에 지급 요청 → ⑥ 질병관리본부 지급